

2019년도 제50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4. 26.(금), 10:00 ~ 12:00
- 장 소 : 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7명
 - 심의위원 : 박성호(심의위원장), 강상욱, 강호갑, 손승우, 임진모, 정태호, 최승수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위원장

2. 전차(제2019-1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심의위원

3. 안건상정 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한국저작권보호원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논의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한국저작권보호원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전송한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시정권고 여부

4. 폐회선언 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 주요내용

- 안전번호 제2019-25108호는 민원인 신고 시점 및 보호원 확인 시점에 게시물의 전송을 확인하였으나 심의 시점에 게시물이 삭제된 사안으로, 경고의 시정권고 심의 기준 마련을 위해 전체심의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1분과위원회(2019. 3. 7. 개최, 제2019-13회)가 결정한 사안임
- 안전번호 제2019-25109호~25111호는 시(詩) 저작물을 개인 블로그에서 전송한 사안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3분과위원회(2019. 3. 25. 개최, 제2019-21회)가 결정한 사안임
- 안전번호 제2019-25112호~제2019-25116호는 불법복제물을 네이버 밴드에서 제공한 사안으로, '밴드'에 대한 심의 기준 정립을 위해 전체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1분과위원회(2019. 4. 18. 개최, 제2019-43회)가 결정한 사안임
- 안전번호 제2019-25117호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캡틴마블' 쿠키영상을 전송한 사안으로, 새로운 유형의 심의 안전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1분과위원회(2019. 4. 18. 개최, 제2019-43회)가 결정한 사안임

- 회의결과

- 안전번호 제2019-25108호는 소설을 한글파일로 올렸다가 삭제했다
라도 삭제 전까지 불법복제물이 전송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고
의 시정권고 가결
- 안전번호 제2019-25109호~25111호는 시(詩) 한 편을 블로그에 게시
한 것도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저작권자가 행정조치 불
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부결
- 안전번호 제2019-25112호~25116호는 밴드가 폐쇄적 또는 소규모로
운영되더라도 불법복제물이 전송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 안전번호 제2019-25117호는 영화관에서 핸드폰으로 영화를 촬영하
는 행위가 저작권법위반임을 안내하고 저작권법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2. 논의안건

○ 제1호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전송한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시정권고 여부

- 주요내용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그 동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불법
복제물을 전송하는 경우에 대해서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본인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고 있음
-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사안에
대한 신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경우와 비교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더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본인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없

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법 감정에 반할 수 있음

- 제3분과위원회(2019. 4. 8. 개최, 제2019-33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하는 경우에 대한 시정권고 여부에 관하여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위와 같은 제3분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금번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자 함

- 회의결과

-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본인이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경우에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권고를 하는 것은 법 규정상의 명시적인 입법내용에서 벗어나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50회 저작권보호심 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1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사이트명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비실명으로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B 위원 : 비실명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에 동의함
- 박성호 심의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사이트명은 비실명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제2019-25108호~25117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10건임
 안전번호 제2019-25108호는 민원인 신고 시점 및 보호원 확인 시점에 게시물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나, 심의 시점에 게시물이 삭제된 사안임
 경고의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정립을 위해 전체심의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1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주소를 입력하여 보여주며)심의대상 게시물에 접속을 시도하면 '삭제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게시물입니다.'라는 팝업이 뜨고 더 이상 해당 게시물을 확인할 수 없음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심의대상 안전이 난해하지 않지만, 심의시점에 이미 삭제된 게시물을 분과별로 안전에 따라 부결 또는 경고의 시정권고로 의결하고 있어서 심의의 일관성 확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제1분과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에 심의대상 안전을 회부함
- E 위원 :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분과위원회에서 부결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게시물이 삭제되었을 때 부결한 사례가 있다고 답변함
- F 위원 : 심의대상 안전이 심의시점에 삭제된 것 이외에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음

게시물이 심의시점에 삭제된 것을 발견하면 경고의 시정권고에 대해서 의결하지만 삭제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하고 있음

게시물이 삭제되어 경고의 시정권고만 한 경우, 게시물이 삭제된 것을 발견하지 못해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한 경우, 게시물이 전송되고 있어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음

- C 위원 : 심의시점에 심의대상 게시물이 삭제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경고의 시정권고를 할 수 없을 것 같음

- B 위원 : C 위원 의견에 동의함

- D 위원 : 심의 시점에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부결한 적이 있었고 제2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음

- E 위원 : 제2분과위원회에서는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부결로 의결한 적은 없었고 경고의 시정권고로 의결하였음

전송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문제인데 역사적 사실로서 한번 불법복제 전송된 적이 있으면 복제·전송자에게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함

경고의 시정권고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구별되어 있는 취지에 비춰볼 때 이미 삭제하였더라도 한번 불법복제 전송을 한 자는 추후에 또 불법복제물을 전송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복제·전송자에 대해서는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야 함

- C 위원 : 파일의 다운로드 기간이 도과하여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도 게시물이 삭제된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함
- E 위원 : 파일의 다운로드 기간이 도과되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 것도 동일하며,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스트리밍, 다운로드 관계없이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야 함
- D 위원 : 게시물 삭제를 블로그 이용자 본인이 직접 한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관리자가 직접 OSP에 요청하는 경우, 게시자가 직접 삭제하는 경우, 불법복제물이 올라간 게시물에 관리자가 댓글을 남겨서 삭제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네이버 밴드는 첨부파일 제공기간이 30일이며, 30일이 지나도 게시물 자체는 삭제되지 않으나, 게시물의 첨부된 파일은 다운로드를 할 수 없음
게시물 삭제도 넓은 의미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게시물 주소를 입력했을 때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팝업창이 뜨면서 게시물 자체를 삭제한 경우와 게시물은 있지만 그 내용을 삭제한 경우가 있음
- D 위원 : OSP가 불법복제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E 위원 : OSP가 삭제한 경우에도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야 함
- D 위원 : 경고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을 생각해보더라도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부결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경고의 시정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B 위원 : D 위원 의견에 동의함
- G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A 위원 : 심의시점에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부결로 의결하자고 전체위원회에 회부한 것이 아니라 심의시점에 삭제된 경우 부결된 사례가 있어서 기준 정립을 위해 안건으로 상정함
- D 위원 : OSP가 불법복제물을 삭제했다라도 전송행위가 발생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경고의 시정권고가 필요함
- E 위원 : 역사적으로 한번 불법 복제하여 전송한 사실이 있었으면 삭제되었더라도 그러한 복제·전송자에게 재차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음
- 박성호 심의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25108호는 심의시점에 이미 삭제되었지만 전송행위가 있었으므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고의 시정권고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건번호 제2019-25109호~25111호는 시(詩) 저작물을 개인 블로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심의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3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며)☆☆☆ 시인의 시 한편이 전부 게시되어 있음

게시물 하단에 문학청춘 2018년 겨울호라고 출처가 명시되어있으며
☆☆☆ 시인의 간단한 약력이 소개되어 있음

- A 위원 : 블로그에 2,739개의 시가 게시되어있는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맞다고 답변함

블로그 이용자가 다양한 시와 시조를 게시하고 있음

- D 위원 : '□□□ □' 카테고리에 2,739개라고 되어있는데 블로그에 2,739개의 시가 존재하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과 해당 블로그를 보여주며)

'◇◇◇◇◇◇ ◇◇'은 문학청춘 2018년 겨울호에 실린 시이며, 320쪽 중 1장~2장을 게시하였음

'●●● ●●●●'도 문학청춘 2018년 겨울호에 실렸고, 320쪽 중 1장~2장을 게시하였음

또한, '●●●●● ●●'는 2018년 12월 시인동네에서 나온 시집에 실린 시이며, 240쪽 중 1장~2장을 게시하였음

3개 안건 모두 게시글 하단에 ☆☆☆ 시인의 약력과 출처를 명시하고 있음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E 위원 : 시정권고하기 전에 권리자에게 행정조치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본 건의 경우 분과위원회 요청으로 권리자에게 연락하여 보호원의 행정조치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였고, 일반적으로 권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는 않음
- E 위원 : 시인이 전화를 통해 시정권고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표명한 것이 그분의 진정한 속마음의 표시인지 의문임
시집에 수록된 각각의 시는 별개의 어문저작물이고 시집은 별개의 어문저작물인 시를 모아놓은 편집저작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시정권고 조치 성격상 권리자에게 일일이 시정권고 조치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생각함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시는 가장 불법복제전송이 많이 이뤄지는 분야로 불법성이 심각한 사안임
- G 위원 : 제3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으로 시에 대한 기준이 분과별로 차이가 있어 기준 정립이 필요하여 전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시의 특성상 시인에 따라서는 자신의 시가 대중에 의해 많이 읽혀지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음
신탁단체에서 신탁된 시에 대해 보호원에 신고하였는데, 권리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도 시정권고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임
- E 위원 : ☆☆☆ 시인이 본인의 저작물이 불법 복제되어 전송되고 있는 것에 대해 행정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시인단체나 시인

개인을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인터넷에서 시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이 초래되면 활자매체나 방송에서도 무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진다고 말하고 있음

블로그 등에 불법 복제되어 있는 시는 실제로 방송매체나 활자 매체에 데이터 베이스 역할을 하여 이들 매체에서 블로그 등을 검색하여 시를 사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D 위원 : 블로그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시를 게시한 것이므로 시정권고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저작권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함

저작권자가 보호원의 시정권고 조치를 원하지 않는데 보호원에서 시정권고 조치를 하면 관리자와 행정기관이 충돌하는 것이라고 생각됨

- E 위원 : 관리자의 의사가 우연히 확인된 것인데 만일 이러한 확인이 시정조치 전에 하나의 절차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외부에 인식되면 왜 관리자로부터 의사확인을 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하였느냐고 불법 이용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다른 저작물에 대해서는 관리자 의사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시 저작물에 대해서 관리자한테 의사를 확인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시인에게 시정조치에 대한 의사확인을 한 부분에 대해 배경설명이 필요한 것 같음

보호원에서 시 저작물에 대해서는 자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고 상업적 저작물인 영화, 출판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본 건 시는 신탁단체가 보호원에 신고했는데, 해당 단체는 신탁을 받지 않은 시를 제공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였음

총 5개 중 3개 저작물은 신탁이 되어있지 않았는데, 권리자 아닌 민
원인이 본 건 게시물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원하여 보호원이 내부
모니터링을 거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임
신탁되지 아니한 저작물이어서 부득이하게 저작자인 시인에게 연락
하여 확인한 것임
저작재산권이 기본적으로 사적이 권리이고 친고죄이기 때문에 권리
자의 이용허락 의사를 고려하여 검토보고 하였음

- F 위원 : 권리자에게 행정조치에 대해 의사 확인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보기보다는, 저작권 보호를 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함
영화나 음악은 우리가 확인을 안했다기보다 지난 10여 년간 확인했고
저작권자에게 확인하면 분명히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임
시는 영화나 음악과 같은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A 위원 : 시가 문제되는 것은 분량이 적은 점과 복제가 굉장히 쉽다는 점임
소설이든 시든 창작물로써 차이는 없으나 분량이 적음
시는 철학적 고통이 함축적으로 표현된 것인데 분량이 적다고 하여
창작물의 가치를 폄하할 수는 없음
해당 게시물은 시에 대한 평론도 없이 게시하였으므로 저작권자의
확인 없이 시정권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D 위원 : 시인과 소설가는 저작권자인데, 서로 마음이 다름
소설가는 단편 또는 장편이 전송되면 문제를 제기하지만 시인은 그
렇지 않음

- E 위원 : 신문 지면에 허락 없이 시가 게재된 경우 시인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신문사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에서 시인의 허락 없이 시가 이용된 것에 대해 소송도 제기하였음
시에 대해서는 널리 권리침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라는 어문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있음
분량이 적기 때문에 쉽게 창작했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편견이 널리 확산되어 있음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은 훨씬 크며, 시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권리 주장을 잘 안한다고 여기는 우리 사회의 고유한 인식이 있어 여타 저작물과 구별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많음
86년 제정된 저작권법 제도 아래에서도 시인들이 제대로 저작권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해당 블로그를 보면 굉장히 악질성이 높는데 우연히 시인에게 행정 조치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고 행정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결한다면 블로그 운영자에게 안 좋은 신호를 줄 수 있음
법원에 민, 형사 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관리자가 스스로 소를 취하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름
관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시정권고 조치를 하는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절차가 아닌데, 우연히 확인되었다고 해서 악질성이 높은 복제·전송자한테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B 위원 : 시 게시물의 경우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해야 할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되어야함
먼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부분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시를 비평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게시자가 여행 후기를 작성하면서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을 경우 등 여러

케이스가 있음

엄밀히 말하면 시 한 편 전체 분량을 사용하여 게재한 게시물의 저작물에 대해 논의가 되어야함

나아가 시정권고 조치를 할 경우 시는 영화, 음악과 같은 저작물처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자에게 시정권고 조치를 희망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고 진행 할 것인지 논의가 되어야함

- D 위원 : 저작권자에게 시정권고 조치를 희망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진행하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사료됨

- G 위원 : F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시는 영화, 음악과 같이 명확히 저작물이라고 생각함

시는 시집 전체로 보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한편의 시는 하나의 독립적 저작물로 저작자의 창작에 의해 수반된 결과물임

아울러 본 건의 경우 '△△△△△△△△△△△△'의 신고 민원에 따라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해당 3개 게시물에 관해서는 신탁 받은 사실이 없어 저작자가 시정권고 조치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 건으로 실제 저작권자인 시인이 시정권고 조치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위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됨

- D 위원 : 어문저작물 중 소설과 시는 다른 부분이 있음

소설은 해당 저작물의 시장 가치의 영향이 상당하지만 시는 시장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 저작물의 특성상 시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인들이 시정권고 조치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음

- C 위원 : 반대의견으로 시를 무단 제공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인식 때문에 거래상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소설과 같이 상당한 지위를 찾지 못한다고 판단됨
소설과 같이 시 또한 상업적 저작물이고 온라인상에서 해당 시 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
나아가 시정권고 방향성에 대해서도 저작물 특성상 출판물 구입으로 이어지는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할 필요 없이 사전적인 이용허락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시정권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 F 위원 : 대부분 동의하지만 시를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권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면 시를 알리는 기회가 줄어들고 시를 즐기는 문화가 정착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 B 위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게시물단위로 시정권고를 하고 있는데 시 저작물도 다른 저작물과 같이 시정조치를 해야 할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E 위원 : 보호원 설립 후 어문저작물 중 소설과 시의 모니터링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에서 소설 저작물은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시 저작물은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음
- E 위원 : 보호원 설립 이전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단체연합회에서 소설을 모니터링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모니터링하지 않았고, 저작권단체연합회에서는 모니터링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E 위원 : 시 저작물에 대해 다른 상업 저작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만약 시라는 문학작품의 특성을 고려하면 시를 미리 차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보호원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시라는 어문저작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본건과 같이 우연히 불법 복제 전송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나아가 시인, 출판사 등 권리자에게 시정권고 조치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은 부적절해 보임
- F 위원 : 보호원에서 시 저작물에 대해 장기적으로 저작권보호정책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저작물과 차별 없이 접근을 해야 한다고 사료됨
- B 위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는 시 저작물에 대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보호원이 적극적인 보호행위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하되 신고 민원에 따라 특정 블로그에 시 전체가 게시되어있는 경우라면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져 함
- F 위원 : 해당 블로그에서 심의대상 게시물 외에 약 4,000편의 시, 시조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블로그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함

- G 위원 : 시는 현재 적극적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보호원이 집중 모니터링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임
- E 위원 : 위원들에게 본 건에 대해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적합한지 의견을 구함
- G 위원 : 본 건에 대해 저작권자인 시인이 시정권고 조치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위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여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F 위원 : 같은 생각임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D 위원 : 같은 생각임
- C 위원 : 저작권자인 시인이 시정조치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는 별개로 해당 블로그 자체가 다수의 시를 업로드하여 불법성이 있으므로 삭제 및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됨
- A 위원 : 같은 생각임
- E 위원 : 위 안건과 별개로 향후 저작권자에게 직접 시정권고 조치를 희망하는지 관련하여 문답 형태로 질의하는 방법은 지양해야 할 것임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25109~25111호는 다수 위원의 입장에 따라 저작자인 시인이 보호원의 시정권고 조치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시정조치를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25112~25116호는 네이버 밴드 이용자가 영화저작물을 파일형태로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자료와 해당 밴드를 보여주면서)해당 밴드들은 친목 도모를 위해 개설된 것으로 보임
특히 제2019-25112호 심의대상 밴드의 경우 해당 밴드를 검색하여 찾을 수는 있지만, 게시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 사진, 실명, 연도, 지역 정보를 기재하여 밴드 가입 신청을 한 후 밴드 리더의 승인까지 거쳐야 함
즉 해당 밴드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폐쇄적 성격이 강한 온라인상의 공간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경우 밴드 이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위축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음
안전번호 제2019-25113호는 다른 밴드에 비해 그 회원 수가 많지만 심의대상 게시물인 불법복제물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시점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밴드의 다른 영화 불법복제물 게시물은 현재 검색되지 아니함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E 위원 : 제2019-25113호의 밴드는 회원 수가 다른 밴드에 비해 많아 보임

- C 위원 : 제2019-25113호의 밴드는 회원가입이 자유로운데, 불법복제 물을 삭제한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삭제한 것이 맞다고 대답함
- C 위원 : 삭제하였다고 하여 부결의견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밴드의 개방성도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E 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밴드'라고 하는 SNS의 특성에 의미를 더 부여하여 부결의견인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밴드라는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회원가입이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과 말 그대로 폐쇄적 형태로 회원을 선별해서 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운영이 되는 것은 구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
제2019-25113호를 제외하고는 현재 밴드 회원 수가 100명 이내로 친목 모임으로 볼 수 있음
제2019-25113호는 현재 회원 수가 1,400명 정도인데 회원 가입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폐쇄적인 성격으로 보기는 어려움
- D 위원 : 시정권고를 하면 밴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할 수 없음
예를 들어 밴드 회원 40~50명이 영화 '극한직업'을 공유할 경우 소규모 밴드라고 부결을 하면, 밴드 회원들이 다시 밴드를 여러 개 만들면 엄청난 숫자가 됨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개설된 밴드라 하더라도 현재 상영되고 있는 영화를 40~50명에게 공유했다면 시정권고를 하는데 다른 여지가 없

다고 생각함

아무리 친목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창작물을 불법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상 그 회원 수가 적어도 폐쇄적인 성격이니, 기본권 위축이니 하는 문제를 생각할 여지가 없으므로 시정권고 대상이라고 생각함

- E 위원 : 네이버 밴드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밴드 회원가입의 용이성이나 현재 회원 수에 대한 정보를 고려해 시정권고 가부를 논의해야 함
- D 위원 : 밴드 회원 수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불법복제물 게시는 모두 시정권고 대상이라고 봄
- A 위원 : 밴드의 도입 취지는 친목 도모였는데 현재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유하는 주요 매체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임
밴드와 관련한 그간의 문제의식을 종합하여 볼 때 시정권고 심의의 기준을 세워야 할 것임
그 기준은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밴드의 성격 즉 밴드 개설이 친목 도모 목적인지, 불법복제물 공유 목적인지 여부, 가입의 용이성, 회원 수,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물의 삭제여부, 불법복제물이 공유된 게시물의 수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 D 위원 : 한 개의 불법복제물이라도 게시되면 원칙적으로 경고를 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함
최근의 밴드는 친목 목적이 아닌 불법복제가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장임
- C 위원 : 최근에 심의 안건 중 밴드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이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호원에서 밴드에 가입을 해서 불법복제물이

공유된 게시물을 확인한 이후에 게시물이 삭제된다거나 밴드에서 강제탈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전체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안건을 회부하게 되었음

밴드에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만한 불법복제물이 공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구성원 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개설되었고, 가입이 어렵다고 해서 시정권고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최근의 경향으로는 밴드와 여타의 블로그 또는 카페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함

- D 위원 : 밴드에서 강제탈퇴 당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커뮤니티에서 실명이나 사진을 공개하지 않거나 오프라인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경우에 이른바 '유령' 회원을 탈퇴시키는 것으로 보임
- G 위원 : 회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됨
회원의 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구성원 간 오프라인 모임까지 있기 때문에 폐쇄성이 강한 밴드는 보호원에서 조사를 할 수가 없음
- C 위원 : 카페나 블로그도 회원 등급을 관리하고 있음
- G 위원 : 밴드의 폐쇄성 여부는 이제 중요한 기준이 아닌 것으로 생각됨
- B 위원 :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밴드 역시 저작권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여 해당 안건을 전체심의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음

지금까지는 밴드의 현재 회원 수라든가 폐쇄성 등을 참작하여 시정권고 대상여부를 판단했었는데, 앞으로는 위 기준에 따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됨

특히 SNS는 특성상 누군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운 매체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적극적인 신고 행위에 의한 제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민원인의 제보를 조사하는 시점에 해당 게시물을 확인 가능한 경우와 이미 삭제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게시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심의시점에 이미 삭제가 된 경우 앞선 안전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경고의 시정 조치를 권고하면 될 것이나, 애초에 접근 불가능한 게시물의 경우에 대해서는 논의해야 할 것임

- E 위원 : 오늘 안전 중에 그런 건이 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현재 보호원의 온라인대응팀에서 민원신고 내용을 확인해서 채증을 하고, 저작권보호심의팀에서 심의 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게시물에 접근할 수 없거나 게시물이 삭제된 예가 있었음
- E 위원 : 민원이 제기된 게시물은 이미 확인이 된 상태인지, 애초부터 접근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이미 확인이 된 상태임

- B 위원 : 저는 최초 조사 시점에 삭제된 경우를 의미한 것임
- E 위원 : 최초 조사 시점에 게시물의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못한 것은 어떤 안전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오늘 안전 중에는 없음
- E 위원 : 오늘 안전 관련해서는 밴드의 가입 용이성이나 현재 회원 수에 대한 정보와 상관없이 불법복제물이 심의시점 현재 밴드에서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조치를 권고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임
 지금까지는 사생활의 보호,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많이 고려했기 때문에 밴드의 폐쇄성 등을 기준으로 시정권고 가부를 의결했었는데, 밴드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확산 또는 발전해가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면 밴드의 가입 용이성이나 현재 회원 수의 많고 적음 등과 같은 기준에 관계없이 경고의 시정 조치를 권고해야 할 것임
- C 위원 : 나아가 심의시점에 접근이 가능하고, 게시물도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라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조치도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밴드 게시물에 불법복제물이 첨부파일 형태로 제공된 경우 30일 동안만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다운로드가 되지 않음

- E 위원 : 그런 경우에도 경고의 시정조치를 권고할 사안으로 판단됨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25112호~제2019-25116호는 모두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25117호 영화 쿠키영상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25117호는 일반인이 신고한 것으로, 영화 캡틴마블 관람 후기와 함께 본인의 휴대폰으로 영화관에서 촬영한 쿠키영상 2개를 블로그에 게시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영 중인 영화를 상영관에서 무단 녹화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E 위원 : 본 안전에서 문제가 되는 '휴대폰으로 영화관에서 촬영한 쿠키영상'도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이 됨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영화관에서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하였는데 앞 사람 머리만 찍혀 있거나 영화관 공간만 찍혀 있어도 저작권법 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해당이 됨
영화관에서 휴대폰 촬영을 한 경우 어떤 형태로든 영화 장면이 찍혔으면 불법복제이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됨
그러나 이번 안전의 경우 일반 대중들이 쉽게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물에 대한 사안으로, 본 건 행위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해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권고할 것인지,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조치도 함께 권고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것임

- B 위원 : 할리우드에서는 영화상영관에서 영화 상영 중에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무단 녹화된 것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상영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건 같은 경우 게시물이 삭제가 되지 않으면 향후 게시자도 난처한 상황이 닥칠 수 있음
어느 상영관에서 녹화가 되었는지 확인이 된다면 해당 상영관이 상당히 높은 페널티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또한 본 불법복제물이 삭제되지 않아 공중의 이용에 계속 제공될 경우 일반 대중들이 이처럼 영화관에서 촬영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복제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 외에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까지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 G 위원 :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작성자가 영화를 감상한 후기를 작성하면서 저작물 전체 분량 대비 극히 일부 장면만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 저작물 전체를 복제해서 전송하는 행위와는 차별점이 있음
불법복제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권고하자는 의견임
- E 위원 : 같은 생각임
할리우드 영화사와 영화상영관 사이의 분쟁은 상영관의 관리 책임 소홀, 계약상 의무를 다 하지 못한 문제이기에 심의위원회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어 보임
- B 위원 : 심의 시점 현재에는 이미 영화관에서 상영종료 된 영화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만, 게시물 내용을 보면 원 저작물 개봉 첫날

찍은 영상임

티저영상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데 영화 개봉일에 해당 영상을 게시한 것이 당일 심의에 올라왔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함

- E 위원 : 일반적인 쿠키 영상과 다르다는 취지인지 질의함
- B 위원 : 그렇다고 답함
- C 위원 : 쿠키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질의함
- B 위원 : 속편을 예고하는 내용임
- F 위원 : 동일 영상이 널리 게시되어 있다는 것은 영화제작사에서도 참작하고 있는 사안으로 보임
- D 위원 :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삭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25117호는 원안대로 경고의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등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19-25108호, 제2019-25112호~25117호는 만장일치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안전번호 제2019-25109호~25111호는 원안대로 부결로 의결함

4. 논의안건

○ 제1호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전송한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시정권고 여부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제2호 안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전송한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시정권고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전송한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신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경우와 비교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더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본인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법 감정에 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3분과위
원회에서는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함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그 동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불법복
제물을 전송하는 경우에 대해서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본인은 시
정권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133
조의3에 비추어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닌 '이용자'가 저작물 등
을 전송하는 것을 전제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달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전송한 불법복
제물등에 대한 권고까지 포함한다고 변경,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E 위원 : 검토보고 의견이 합리적인 의견이라 생각됨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의 연구 보고서 작성을 제안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한 바 있음
그러나 법 해석을 통한 해결은 법 규정에 대한 확장해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는 방안을 제안함
- A 위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복제물을 직접 게시한 것은 불법성이 강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게 요청되나, 현행법의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법 개정을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본인이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경우에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권고를 하는 것은 법 규정상의 명시적인 입법내용에서 벗어나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5. 폐회 선언

- o 박성호 심의위원장이 제50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50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6. 18.

심의위원장 박성호

위원 강상욱

위원 강호갑

위원 손승우

위원 임진모

위원 정태호

위원 최승수